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검사대행자”를 “종합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제17조제1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 정비사업자가 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7의2.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 정비사업자의 지정

7의3.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 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7의4.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 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별표 2 제2호 위반행위란 나목 중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 제58조제10항”을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

항”으로 하고, 초목 중 “법 제48조제2항”을 “법 제4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조목 및 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9호	50	150	250
코.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10호	50	150	250

별표 2 제2호호목부터 그목까지를 각각 구목부터 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호.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 2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83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84일 이상인 경우		20

부 칙

이 영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검사대행자, <u>종합검사대행자</u> , 성능시험대행자, 위원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① ----- ----- ----- ----- ----- ----- ----- <u>종합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u> ----- ----- ----- ----- ----- ----- -----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1의2.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u>		
22. ~ 32. (생략)		22. ~ 3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8. ~ 10.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7의3.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7의4.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8. ~ 10. (현행과 같음)

② -----

-- 제외한다) 및 법 제51조에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 ④ (생략)	<u>따른 이륜자동차검사(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 정비사업자가 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3858